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77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 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

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 ▶ 서울여성플라자 : 지하 3층, 지하 5층(연면적 22,519m<sup>2</sup>)
    - ▶ 스페이스 살림 :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7,957m<sup>2</sup>)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살림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3) '22년 소요예산(안) : 16,573,267천원

4) '22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6,762,737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9,810,530천원

5)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 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함)’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로서 여성가족재단의 출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u>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 「지방재정법」 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 또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sup>1)</sup>을 규정하고 있음.

## 2 여성가족재단 설립 개요 및 운영 현황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며, 주요 사업으로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및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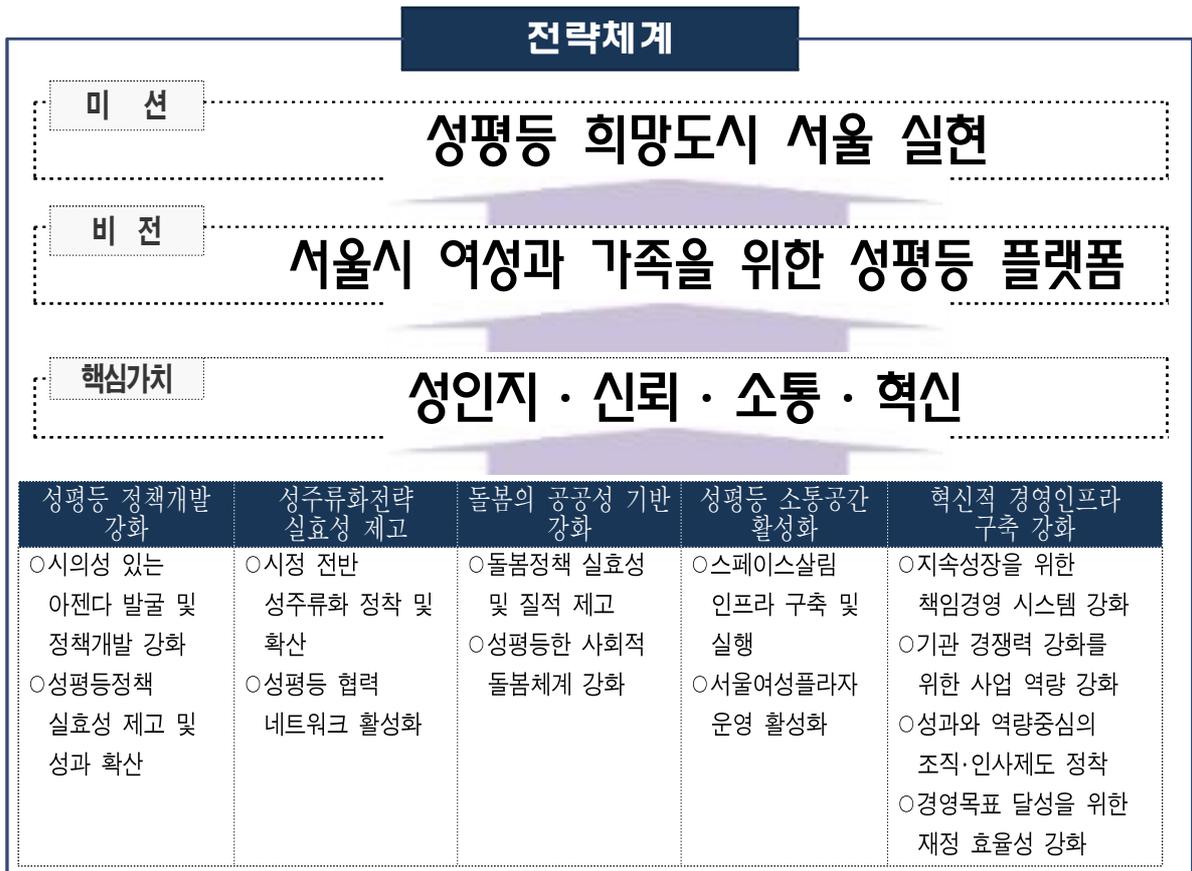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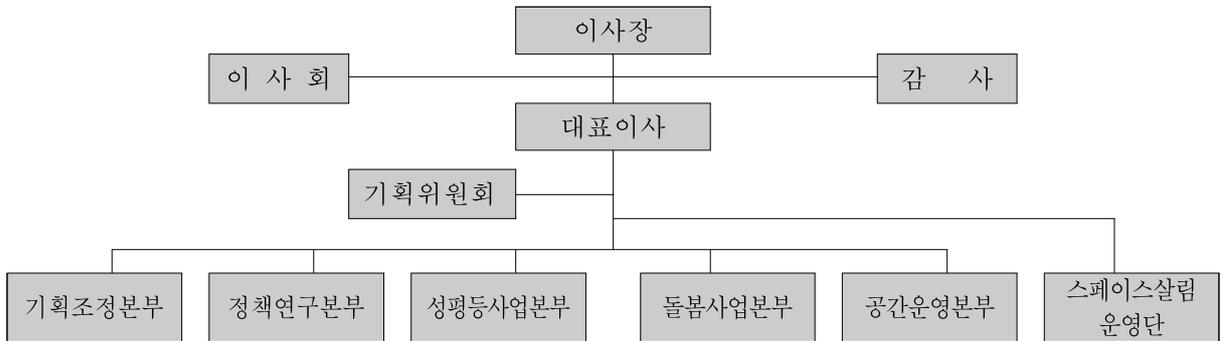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10.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1.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2021년 8월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운영 미션과 비전, 조직 및 인력, 주요 시설 현황,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미션과 비전>



<조 직 : 5본부 1단>



<인 력 : 정원 명 / 현원 명>

(단위 : 명, 2021.8.25.기준)

구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정원	165	1	3	5	32	29	23	12	60
현원	160	1	1	6	24	25	32	13	58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공간마련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운영시설 개요>

구분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
위 치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면 적	연면적 22,520㎡	연면적 17,957㎡
규 모	지하 3층, 지상 5층	지상 7층, 지하 2층
건립기간	1999.11 ~ 2002.6	2017.12 ~ 2020.10
주요시설	대관공간, 사무공간, 편의시설	창업지원공간, 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교류·편의공간

- 2021년 사업예산은 220억원으로 2020년 167억원 대비 52억원 증가(31.0%)하였으며, 출연금은 2020년보다 12억원 증가(8.4%)한 150억원임.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추경으로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시설, 대관, 식당 등의 시설운영수입과 관리비수입이 주로 감액 편성되었음.
- 2021년 사업비에는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 2호점 예산 24억원이 포함되었음.

### <2021년 예산>

#### - 수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0	증감(증감률)
계	22,044	16,825	5,219(31.0%)
출 연 금	15,030	13,859	1,171(8.4%)
자 체 수 입	4,629	2,966	1,663(56.1%)
사업운영수입	273	8	265(3195.1%)
시설운영수입	1,592	479	1,113(232.5%)
기 타 수 입	838	447	391(87.3%)
이월 잉여금	784	281	503(179.7%)
대행사업수입	1,142	1,751	△609(△34.8%)
수탁기관	2,385	-	2,385(100%)

#### - 지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증감율)	비고
계	22,044	16,825	5,219(31.0%)	
사업예산	8,811	8,072	739(9.2%)	· 성평등 정책개발 강화 ·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 혁신적 경영인프라 구축 강화
일반관리비	10,847	8,753	2,094(23.9%)	· 행정운영경비 : 인건비, 기본경비 · 예비비
수탁기관	2,385	-	2,385(100%)	· 거점형 키움센터 1,2호점

※ '21년 총사업비에 수탁기관(거점형 키움센터 1·2호) 예산 2,385백만원 포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주요 성과지표 중 일부는 목표를 초과했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성과지표>

<b>주요 성과지표</b>			
단위목표	지표	목표	실적 (7.31기준)
성평등 정책개발 강화	이슈별 성평등 정책 개발	35건	32건 추진 중 4건 완료
	정책활용도 제고	534.6%	(22년 집계 예정)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50.5%	42.6%
	일·생활균형 컨설팅	611건	260건
	성평등네트워크 협력연계 참여기관	170건	128건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10건	1건
	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	2,842명	2,249명
	돌봄관련 컨설팅 및 상담	4,068건	3,158건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스페이스 살림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자	2,000명	2,336명
	포스트코로나 여성창업 지원	80개	110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이용률	50%	66.4%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7.31.기준)
성평등 정책개발 강화	여성가족 맞춤형 선제적 정책연구 (기본과제·수탁과제)	36개	26개	20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3,160건	3,173건	2,004건
	성주류화정책 지원 역량 강화	2,963명	3,202명	1,671명
	성인지 콘텐츠 개발	12건	13건	12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컨설팅 및 인식개선 노력	440건	531건	260건
	성평등 네트워크 참여기관 활성화	176기관	158기관	128기관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안심보육환경 조성 위한 컨설팅	3,471건	4,141건	3,158건
	보육교사 역량강화 및 돌봄 콘텐츠 개발	2,681명 7건	2,461명 7건	2,249명 1건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성평등 소통공간 프로그램 운영	17회	15회	13건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업 목표 조정

### 3 출연에 대한 타당성, 적절성 검토

- 최근 3년 간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한 예산규모는 총 378억원으로, 한해 평균 126억원('19년~21년, 3년 평균)정도인 바, 재단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출연금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금 지급에 대한 효과성과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9	13,111	8,901	67.9	25.1
2020	16,825	13,859	82.4	55.7
2021	22,044	15,030	68.2	8.4
총액	51,980	37,790	-	-
평균	17,327	12,597	72.8	-

※ '21년부터 총사업비에 수탁기관(거점형 키움센터 1·2호) 예산 2,385백만원 포함

-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sup>2)</sup>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3)</sup>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여성가족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고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동 재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4 종합 검토 의견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개발,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살림 운영 등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코로나19로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살림 운영시설의 수입 감소 및 공간 운영의 어려움 등이 있는 상황으로 재단 출연금의 총 규모 및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2022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와 예산지원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677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 ▶ 서울여성플라자 : 지하 3층, 지하 5층(연면적 22,519㎡)
    - ▶ 스페이스 살림 :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7,957㎡)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살림

○ 근거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다. '22년 소요예산(안) : 16,573,267천원

라. '22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6,762,737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9,810,530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 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양경은(☎ 2133-5038)